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양육비용 부담의 처분·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추가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479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기관 의견	7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03. 31.
3. 회 부 일 : 2025. 04. 0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정법원 관장 사항인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類) 사건에 「민법」 제9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생략) 2. 가사비송사건 가. (생략) 나. 마류(類) 사건 1) ~ 6) (생략)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u><신설></u> 8) ~ 10) (생략)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6) (현행과 같음) 7) -----제924조의2 제1항----- ----- ----- ----- ----- 7)의2 「민법」 제9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8)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민법」 제9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이 개정안과 함께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8호)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자녀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민법」 제924조의2제2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같은 조 제3항), 개정안은 이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추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8호)의 해당 내용>

현행	개정안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생략) <신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양육

<신 설>	에 관한 권한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

비송사건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라기보다 국가가 정책적인 목적에서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임.¹⁾ 비송사건의 경우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고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게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 심판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음.²⁾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을 살펴보면, 쟁송적 성격이 약하다고 평가되는 라류 사건³⁾과 비송사건이기는 하지만 대심적 분쟁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마류 사건으로 나뉨(제2조제1항제2호).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구하는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에

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 비송, 2014 참조.

2) 사법연수원, 가사재판연구, 2017, p.145 참조.

3)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등.

관하여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상세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마류 가사비송사건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도록 하고(제48조)⁴⁾ 심판의 청구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제50조)⁵⁾.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의 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쌍송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건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심문의 원칙과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또한,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사건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바,⁶⁾ 해당 사건과

4) 「가사소송법」 제48조(심리방법)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사건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개정안의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의 사건 모두 쟁송적인 성격을 갖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정책적으로 후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루는 것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함께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48호)과 연계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관련하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가사소송규칙 개정 등 개정법률 시행 준비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에 관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

-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분 또는 변경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